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1398

2020. 4. 2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2일 김종무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0.4.8.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김종무 의원)

1) 제안이유

○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규정의 타당성이 미흡한 '서울건축포럼'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 정책 지원 및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함.

2) 주요내용

○ 서울건축포럼 설립 및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 정책 지원 및 추진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변경함(안 제33조)

○ 서울건축포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

Ⅲ.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비영리 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이하, 포럼)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민관협력의 입법 목적만 남겨두고 나머지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 '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사단법인을 시장이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다른 전문가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 서울시와 포럼 간에 민관협력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건축 관련 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근거만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현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민간 법인의 설립은 주로 서울시 출연에 따른 재단법인에 관한 사안이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자원봉사센터와 이 조례의 포럼이 조례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상위법[1]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2] 있는 반면, 포럼은 상위법(건축기본법)에 근거가

---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없고 서울시의 재정 지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민간 법인 현황 (자료: '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민간단체명	소관부서	해당조례 및 근거규정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행정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설립 및 사업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다.
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	도시공간 개선단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3조(서울건축포럼의 설립 등) ①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관련 정책을 지원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건축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시민소통 기획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립)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문화본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본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포럼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검토보고서 붙임1), 포럼의 설립('16.1.)은 민간이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서울시가 허가를 해 준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3] 이행하였고, 그 동안 소액 범위의 수의계약이나[4]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포럼이 서울

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9년 예산 55억원 중 50억원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파악됨

3) 사단법인 설립시,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포럼의 경우에도, 민법과 국토교통부 소관 및 그 소속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음

시 용역을 일부 수행한 바 있음.

○ 이 조례에서 포럼의 설립·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은[5] 서울시의 건축정책 수립·시행에 민간 전문가 모임을 적극 활용하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코자 한 것으로 이해되나,

포럼의 설립·운영은 일반적인 사단법인 사항과 차이가 없고, 서울시와 포럼 간에 민관협력의 특별한 긴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포럼이 일부 수행한 서울시의 용역은 관련 학회나 전문가단체, 산·학·연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럼이라는 특정 단체의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은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오히려, 시장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의 설립신청과 공공의 설립 허가, 즉, 민간의 법인 운영과 공공의 지도감독이라는 이원화된 구조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서울시 편의에 따라 민간 외곽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로 남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되, 건축정책에서 민관협력의 입법취지는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구매·용역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서울시 방침에서는(재무과-13795, ’17.3.17)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물품구매·용역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5) 이 조례 제정(‘10.7.) 당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2006.7.제정)의 서울문화포럼의 설립 규정을(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한 것으로 이해되나,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12년 전부개정되어(’12.12.) 해당 사항은 삭제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민간 협력 등) 시장은 건축 관련 정책을 지원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서울건축포럼의 설립 등) ①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관련 정책을 지원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건축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포럼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포럼은 건축 관련 민간전문가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포럼은 건축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및 지원 2. 시의 건축 관련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3.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보급 등 홍보 4.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그 밖에 포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제33조(민간 협력 등) 시장은 건축 관련 정책을 지원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한다.	
제34조(포럼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럼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럼이 제33조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